

DMZ 평화적 공존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

이성춘*

요 약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정전협정 문헌적 고찰을 실시한 후 군사비밀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까지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 배치 현황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 지해요소로 판단하였다.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군사력 감축방안을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북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교류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제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위한 비무장지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경계는 첨단화, 과학화하여 병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직통전화 수도 최대한 늘려서 우발상황 발생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익 등을 보장하면서 군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Confidence-building measures for peaceful coexistence on the DMZ

Lee Sung Choon*

ABSTRACT

This article reviewed the status of military force on the DMZ(demilitarized zone) without any confidential problems after literature reviewing on a ceasefire agreement and these powerful military force is judged to be a very serious setback to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so it suggests the ways to reduce inter-korean military force based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phenomenon to preparing for an era of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easing of tension on the inter-korean military force is an essential element in building infrastructure of peaceful reunification. From now on, both Seoul and Pyongyang might check inter-Korea exchange cooperation Project and reconcile their differences. Primarily, The troops of DMZ would be minimized by Modernization for Military confidence-building. Increasing North-South hotline as possible further, it could contribute to ease of tension in case of emergency. Political and economic plans should be presented that do not arise the military tension simultaneously with ensuring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in the North Korea's regime.

Key words : Demilitarized zone, DMZ, Modernizatio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접수일(2016년 4월 28일), 수정일(1차: 2016년 5월 18일)
게재확정일(2016년 5월 30일)

* 송원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조교수

★ 본 논문은 2015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DMZ평화센터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공동학술회의간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서 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래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아직도 군사지역으로 갈등과 경계의 지역이다. 2013년 7월 27일 최초로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1]은 “지금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역동적 경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데 따른 유업(legacy)”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6·25전쟁은 더 이상 ‘잊혀진 전쟁(for gotten war)’이 아닌 ‘명예로운 전쟁(honored war)’이자 ‘영광의 승전’으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동년 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정전협정일^[2]을 ‘유엔군 참전의 날(국가기념일)’로 선언하고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가치와 의무가 부여된 정전협정에 의거 설치된 비무장지대의 오늘날의 모습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화약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또는 정전협정에 대해서 많은 논문이 보고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논문은 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 등 법적인 고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비무장지대의 개발에 관한 연구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정전협정 문헌적 고찰을 실시한 후 군사비밀에 문체점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까지 남북 모두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 배치 현황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비무장지대의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 심각한 저해요소이다.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군사력 감축방안을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과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비무장지대 고찰

2.1 비무장지대의 개념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 DMZ)는 전쟁, 분쟁상태 혹은 정전상태에 있는 둘이상의 국가(또는 군사세력, 동맹) 사이에 평화조약, 휴전협정

등에 의해서 설치된 군사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대부분 정전주변 지역에 설치된다. 비무장중립지대, 중립지대(Neutral Zone)라고도 한다. 국제법상 국가가 군사병력의 주둔과 군사시설의 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그 국가의 영토와 영해, 하천, 운하 그리고 그의 상부공역을 포함하는 특정지역이나 구역^[3]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비무장지대란 무장되지 아니한 곳으로 병력, 전쟁물자 등이 금지 및 제한된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설치 근거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한글로는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4]이다. 이를 줄여서 정전협정^[5]이라 부르고 있으며 정전협정은 전문, 5개조, 63개항, 부록으로 되어 있다. 협정문 제1조에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6·25전쟁 발발 후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그 해 7월 26일 협상 의제와 토의 순서가 확정됨에 따라 7월 27일부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문제에 대한 토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유엔군 측은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쌍방의 팽팽한 주장으로 회담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유엔군 측은 회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전체 전선에 걸쳐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하였다. 유엔군 측은 강력한 공세로 인하여 10월 22일 공산군 측은 요청으로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된 것이다. 공산군 측은 웅진반도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유엔군에게 현재의 전선에서 최대 40km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산 북방 16km 부근의 지능동을 기점으로 하는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뒤 수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군사분계선을 쌍방 군대의 현재 접촉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각각 2km씩 4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11월 27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설정협정이 조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 ② 현재의 접

축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③ 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고, 만일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의 접촉선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합의한 지 30일이 되는 그 해 12월 27일까지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이 협정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 후 휴전회담은 난항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1953년 6월 8일 포로 교환문제를 마지막으로 휴전회담 의제가 모두 타결됨에 따라 1953년 7월 22일 군사분계선이 다시 확정되고 동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연합국에 의해 38도선으로 분단되었던 한반도는 또다시 정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또는 ‘휴전선(休戰線)’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분단된 것이다. 이로써 군사분계선은 정전체제하에서 한반도 분단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2.2 비무장지대의 설치

비무장지대 설치 관련한 정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전선은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양측이 서명한 정전협정에는 “양측의 통제 하에 있는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모든 무장역량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후 12시간되는 시점부터 즉 한국 시간으로 7월 27일 22시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고 하였다. 모든 군사역량과 보급과 장비는 정전협정이 발효된 후 72시간 이내에 비무장지대 DMZ (Demilitarized Zone)에서 철수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7월 28일 아침부터 전선의 국군과 유엔군 부대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현 위치에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위치한 동서해안의 도서로부터 철수를 시작하였고 포로송환을 위해 거제도과 제주도 일대에 수용되어 있던 북한군 포로 3,600명과 중공군 포로 1,200명을 LST에 승선시켜 인천으로 수송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MDL과 비무장지대(DMZ)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양측이 이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철수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비무장지대를 설정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또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양측은 72시간 내에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고 합의 하였다. 군사분계선만 설정하지 않고 비무장지대까지 설정하는 이유는 충돌을 방지하면서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a buffer zone)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정전협정에서 명시된 군사분계선(MDL)의 위치는 한강하구-임진강하구(문산 서남 8km)-판문점-고양대-유정리(철원 북쪽 12km)-하감령-밤성골-문등리-신탄리-수령-동해안 감호(남쪽 1km)를 연하는 선이었다. 육지 2억7천만평(992km²)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이다. 군사분계선은 지도상에 표시된 선으로 철책선이 가설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물은 군사분계선 155마일 약 248km를 따라 2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양측은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ttee)의 감독 하에 군사분계선과 남북 및 북방한계선을 따라 규정된 표지물을 설치하여 경계의 관리는 물론이고 그 책임구역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3 비무장지대의 병력배치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제1조 6항에 의하면 “쌍방은 모든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로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7항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항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항 “민사행정과 구제 집행관계자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은 자만이 출입할 수 있다. 또한 10항에서는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

동으로 책임진다.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은 군인 또는 민간인 인원수는 쌍방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이러한 정전협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민사행정 경찰이 투입되어야 하나 당시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는 우선 군 경찰인 헌병을 투입했다가 민사행정 경찰로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합의사항이었다. 남북 양측은 처음부터 전투인원을 투입한 후 민정경찰이라 부르며, 경찰병력으로 교체하지 않았다. 또한 1953년 7월 31일에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쌍방은 민사경찰을 보충과 권총만으로 무장시키자는데 합의하였다. 보충이라 함은 방아쇠를 잡아당길 때마다 총탄 일(1)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무기라고 정의된 바 있는 자동식 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비무장지대에 자동식 무기 반입을 금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단이 함께 있는 쌍방 공동 경비의 비무장지대로서 유일하게 쌍방의 경비병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나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도끼 만행사건 이후 금지되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찰해 보았을 때 비무장지대의 출입 및 각종 시설물 설치 등 제반사항을 조치시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근본적으로 비무장지대가 무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무장지대가 한반도에 전쟁행위를 중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3. 비무장지대 남북 군사력 배치와 신뢰구축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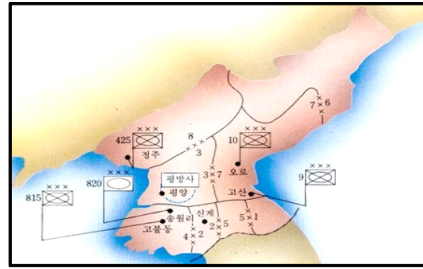
3.1 비무장지대 시설물

비무장지대(DMZ)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부

터 남북한 사이에 가장 침예한 군사적 대치 공간이다. 비무장지대내의 주요 시설물은 GP, GOP, 표식물, 철책, 대북심리전 장비, 대전차 장애물, 항공기 월경 방지판, 투광등, 지뢰지대 등이 있다. 북한측은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중화기와 전투병력을 집중배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요새화 전략에 따라 초소를 진지로 구축했으며, 진지 사이에는 터널로 연결했다. 그리고 진지 상단부에는 나무를 심어 위장했다. 전방대에서 내려다본 고요한 모습과 달리 진지에는 중화기와 대규모 전투병력이 투입됐다. 비무장지대 철책선은 1968년 북한 경찰국 124부대 소속인 김신조의 30명의 북한 침투조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남하⁷⁾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GOP색터를 관할하던 주한미군 2사단이 후방지역으로 배치되고 한국군이 투입되면서 기존의 허술했던 철조망 대신 155마일 전선 전역에 3중 철조망을 설치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GOP의 모습이다. GOP와 군사분계선 사이에는 남북 양측 공히 전술적인 목적으로 적을 관측하기 위해서 GP(GP:Guard Post)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GP는 북한측이 1960년대 들어 고지 정상 위주로 설치하였으나 1970년 초에 집중적으로 지하 요새화 위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약 200여 개에 달하는 GP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최북단이 바로 남방한계선인 GOP이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무장지대와 GOP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GP인 것이다. GP는 GOP처럼 동서를 가로짓는 철책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일종의 거점으로 마치 중세 성을 연상 시키는 정방형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GP에서 GOP를 잇는 보급로 통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철책으로 둘러싸여 북한군의 접근을 방지 한다. GP는 GOP와 마찬가지로 북한군 GP 및 비무장지대내의 특이상황을 관측하여 보고하며 DMZ 안에서의 차단작전을 실시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GOP와 임무는 대동소이하지만 DMZ내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GP 병력은 일반 보병부대가 아닌 ‘민경대대’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교묘히 정전협정 위반을 피하고 있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남북이 운용하는 전방관측소는 사실 정전협정 위반이다. 군사정전위원회 허가가 없음은 물론, 인원도 천 명을 훨씬 넘을 뿐 아니라 자동소총은 물론 박격포, 무반동총까지 배치했기 때문이다. 심리전시설물은 상대방에게 시청각 심리전을 수행[8]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대북 및 대남방송 시설물과 시각적인 심리전 시설물 등이 주요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대전차 장애물 역시 남북 양측 주요 전차 접근로상에 설치되어있다. 또한 비행기 월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경방지판 구조물이 설치 되어있다. 비무장지대가 최초의 개념과 달리 주요 군사시설물 등에 의거 중무장지대로 변화된 것이다.



*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1988, p. 80. 1990, p. 79.

(그림 4) 북한 지상군 부대 배치

<표 1> 북한군 전방지역 병력배치에 대한 국방백서 현황

3.2 비무장지대 현 군사력 배치 현황

비무장지대 지역은 휴전이후 세계 최고의 중무장지역으로 변화되었다. 현 군사력 배치현황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연히 군사적인 비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남북의 군사력 현황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피아 군사력의 비교방법[9]은 단순정태적 방법, 확장정태적 방법, 준동태적 방법, 복합동태적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정태적 방법 중에서 병력 및 무기의 단순 수량비교방법[10]을 적용하여서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상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 비무장지대를 연하여 0개 군단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전방 지역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우리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 기습적인 대량 집중 사격이 가능하여 최근 시험개발 중인 300mm 방사포는 최대사거리 고려시 중부권 지역까지 사격이 가능[11]하다. 즉 북한군 병력 중 70만 명의 보병 및 기계화 부대와 8천문의 야포 및 2천대의 전차와 기계화 전력을 휴전선으로부터 80km 이내의 근거리에서 전진 배치[12]하였다. 참고적으로 북한군의 병력배치에 대한 현황을 국방백서[13]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그림 4) 및 <표 1> 과 같다.

구 분	전방지역 병력배치 사항	비 고
1967년 국방백서	· 군사정착 및 개략적인 군사력 현황 언급 · 전방지역 병력배치 현황 내용 없음	최초 발간 pp.48~52.
1988년 국방백서	· 북한 지상군 부대 배치 · 북한 지상군의 주력부대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평원선 이남 전방지역에 60개 정규사단 및 여단을 추진 배치함으로써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 없이 즉각 공격이 가능하다. 전방군단은 제1군단, 제5군단, 제2군단, 제4군단으로 배치되어 있다.	pp.79~80.
1990년 국방백서	· 1988년 국방백서 내용과 동일	p.78.
2000년 국방백서	·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10여개 군단, 60여개 사단/여단을 전진 배치시켜 언제라도 부대배치의 조정 없이 기습 남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전방에 4개 군단..	p.40.
2010년 국방백서	·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14]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북방한계선 일대에 준비된 강도진지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전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배치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 집중 사격이 가능하다.	p.24.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에서 지상군 전력의 약 70% 배치 언급, p. 23.
2014년 국방백서	·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상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방지역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우리의 수도권지역에 대해 기습적인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며, 최근 시험개발 중인 300mm 방사포는 최대사거리 고려시 중부권 지역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p.10. 가장 최근 발행된 국방백서

한국군도 북한 전력의 휴전서 근접배치에 대응하면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지역에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비무장지대는 정반대로 중무장지대가 된 것이다. 특히 북한 화력과 병력이동의 생존성 및 기습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남침용 땅굴을 주요 접근로상에 설치하였다. 우리 군이 발견한 4개의 땅굴들이 주요 접근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3.3 신뢰구축 노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지대화 노력은 1970년대 초반부터 비무장지대내의 비무장화 방안에 대한 제의로부터 시작하였다. 유엔사와 남북의 비무장지대의 신뢰구축 노력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신뢰구축 시기는 제안 시기를 고려하여 3단계^[15]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3.1 1970~87년(인식의 변화 시작기)

1971년 6월 12일 제31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 소장이 ①전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확대 실시, ②쌍방이 합의된 지역으로 군사인원의 철수, ③군 정전위 군사시설 파괴조치, ④무장인원의 비무장지대 출입금지 등 4개항을 제안하면서 비롯되었다. 북한과 중국은 유엔군 수석대표의 제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동년 7월 29일 제319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7개항'^[16]을 역제안하는 사항으로 확대되었다. 1972년 2월 김용식 외무장관은 대북성명을 통해 로저스안의 수락을 북한에 촉구하였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로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최초의 제안이었다. 북한은 동년 6월 워싱턴포스트지와 회견에서 비무장지대 내 병력감축과 시설의 철수를 위해 협상할 용의가 있음^[17]을 밝히기도 하였다. 1981년 11월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는 제408차 회의에서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 제안을 제의하였으나 반응이 없었다. 북한 측의 호응^[18]을 얻지 못하자 1982년 2월에는 한국은 손재식 통일부장관 명의로 민족화합을 위한 20개항의 시범사업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다. 시범사업 제의내용 중 비무장지대 관련 제안내용은 비무장지대 공동경기

장 건설,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완전 철거 등 7개^[19] 항목이다. 인식변화 시작기에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에 대한 대북 제의는 유엔군 정전위원회가 추진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 측에게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초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3.3.2 1988~1990년(평화적 이용에 관한 인식 및 접근기)

한국정부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북한에 본격적으로 제의를 시작한 것은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시를 건설하여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자”^[20]고 제의하였다. 동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 특별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하고 ‘평화구역’을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198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된 비무장지대 관련내용을 구체화^[21]한 것이다. 북한은 1990년 5월 최고인민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22] 군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의서로 여겨지는 남북기본합의서^[23]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24] 및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합의한 사항이다. 이것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진정성 있는 합의사항이며 남북관계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남북 양측 모두 진일보한 합의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북공동 평화적 이용 인식기에는 남북 양측 공히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 최초의 합의는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여겨진다. 향후 정전체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한 건은 향후 남북협상시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3.3 2000년대(교류협력과 체재보장의 장으로 인식)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교류협력의 근본적인 틀을 제공하였으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서해북방한계선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²⁵⁾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10·4선언에서는 서해평화특별지대만 명기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시 이와 같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인식은 남북한 당국자들에게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와 철도 연결사업 등을 통하여 남북 양측이 비무장지대의 일부를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부문에 대한 관리문제도 새로운 단계²⁶⁾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발전하지 못한 점은 남북한이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는 인식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남측은 경제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었으나 북측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방안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4. 평화적 공존과 비무장지대 신뢰구축 방안

지금까지 정전협정에 의거 비무장지대 고찰, 병력 배치, 중무장된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지대화 등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뢰구축방안은 현재까지 많은 연구인원들에 의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뢰구축 방안들이 한 개 분야별로 제시된 내용들이 많다. 군사적 신뢰구축 또는 평화적 이용방안²⁷⁾,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인 문제²⁸⁾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비무장지대 신뢰구축 방안을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²⁹⁾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화된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면서 평화적 공존의 시대로 나아 갈 것인지 제시한 후 정치, 경제적

으로 신뢰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진정한 비무장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방법이 상호 복합적으로 뒷받침 되었을 경우 가능하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사항은 북한 체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정치, 경제적 측면이 병행 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4.1 군사적 측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선행적인 사항은 우선적으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우선적으로 북한 체제에 직접적인 충격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군사지리적인 이점을 비무장지대를 통하여 행사³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접근이 쉽지 않다.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첨단 과학화 장비로 대체하면서 배치 병력을 감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양측 공히 무인GP에 대한 협상도 군사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상황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통선 확대 및 상시대화채널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상시대화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정전위나 남북장성급회담 등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직통전화도 남측 전방사단과 북한측 전연사단, GP와 GP, 합동참모본부와 북한 총참모부, 국방부와 인민무력부 등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은 남북장성급회담과 군사 실무회담을 통하여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가능성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는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에 근본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중무장된 비무장지대의 모습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이 담보 되었을때 평화적 이용도 가능한 것이다.

4.2 정치적 측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북한 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북한체제 유지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군사적, 경제적 측면의 진행사항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측면은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4대국은 물론 EU등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3 경제적 측면

북한에게 경제적 실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다. 실제로 2000년대 북한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에도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접경지역의 이용에는 합의하였으나 본격적인 비무장지대 이용에는 소극적이었다. 즉 체제보장 및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정부에서부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많은 사업이 제시되었다. 새롭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제시안들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중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장소선정 문제도 지자체 및 정부의 입장도 물론 고려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평화공원 추진사업이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일부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을 경제적 이익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 검토시에도 반드시 군사적인 사항과 연계된 경제적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5. 결론

냉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를 반으로 갈라놓은 비무장지대를 더 이상 중무장된 세계의 화약고 남겨둘 수는 없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북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교류협력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고찰에서는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근원과 각종 배치물을 살펴 보았다. 비무장지대 군사력 배치는 단순비교법에 의거 북한의 병력 배치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평화적 공존을 위한 비무장지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군사적 신뢰구축뿐만 아니라 군사적 신뢰구축과 연계된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경계는 침단화, 과학화하여 병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직통전화 설치도 최대한 늘려서 우발상황 발생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군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는 정치경제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군사적 위기조성 후 타협, 보상 및 도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인내심을 갖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비무장지대 비무장화를 진행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남북은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2009년 미국정부와 의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2009년부터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휴전일(National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로 지정하고,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미국의 국가 기념일은 1년에 총 19일이며, 이 중 조기게양을 하도록 하는 기념일은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의 ‘참전용사 추모일(Veterans Memorial Day)’과 7월 27일의 ‘한국전쟁 휴전일(Korean War Armistice Day)’이다.
- [2] 북한은 전쟁 직후부터 1953년 7월 27일을 ‘전승절’로 부르며 승리한 날로 부르고 있다. 6·25전쟁을 기록한 ‘조선전사 朝鮮全史’에서 “조선에서의 정전 실현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강대한 적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고 쟁취한 역사적 승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김인영·김재한, 『DMZ 발전적 이용과 해체』, 도서출판 소화, 1999, p.68.

- [4] 영문으로는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중문으로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이다.
- [5] 정전협정문서 작성 국가별 ‘정전’과 ‘휴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은 ‘군사용어사전’에서 “정전(停戰, Truce)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피아간에 임시동안 혹은 국지적으로 전투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며, “휴전(休戰, Armistice)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며 쌍방조인에 의하여 이루어짐. 남북한 간에는 ‘정전’과 ‘휴전’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육군본부, 2012, p. 492. 북한은 ‘조선말대사전’에서 “정전은 맞서 싸우는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서로 적대적 군사행동을 정지하는 것”으로 휴전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205. 한편 북한은 ‘국제법사전’의 ‘정전협정’에서 “정전은 어디까지나 싸움을 정지할 뿐이며 전쟁의 완전한 법적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전협정’에서는 “조선정전협정은 법률형식에서 적대쌍방군사령관들사이의 협정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협정이다...조선정전협정의 특징은 또한 그것이 무기한부협정이라는 것이다. 조선정전협정은 다른 정정협정들과는 달리 협정의 유효기간을 찍어 밝히지 않고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라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국제법사전』, 2002, p. 324. p. 340. 미군은 JP 1-02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국방군사용어사전)에는 ‘정전’과 ‘휴전’의 용어 정의가 없으며, 미군에 문의 결과 ‘정전’과 ‘휴전’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중국은 세계지식 잡지에서 “停火(Cease-fire)은 休戰(Armistice)을 위한 하나의 선결 절차라 할 수 있다.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전이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련 외무부 차관 그로미코는 미국 주재 소련대사 말리크의 제안에 대해 [휴전은 마땅히 정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休戰(Armistice)은 국제법에 의하면, 휴전은 교전국 쌍방이 군사충돌을 정지할 수 있는 협정이다. 휴전은 일반휴전과 특수휴전(국부휴전)으로 크게 구분한다”, 『세계지식』, 중국세계지식출판사, 1951. p.15. 정전협정문서 국가별

로 ‘정전’과 ‘휴전’의 정의를 확인 결과 상호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언어적 측면에서는 상이하나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전쟁당사국이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결과는 같다는 데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 [6] DMZ 범위는 설정 당시부터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남과 북이 군사적인 목적 등의 이유로 남북이 각각 2km씩 철수한다는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음. 실제 가까운 곳은 폭이 1km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7]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 정찰국 소속인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 서울 종로구 청운동일대까지 진출했다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발각 되어 교전이 벌어진 것이다. 김신조 부대원 31명 중 29명은 사살, 1명 생포(김신조)하였다. 나머지 1명은 도주하였으며, 김신조 증언에 의하면 도주한 이는 훗날 조선인민군 대장인 박재경 총정치국 부총국장을 역임한 인물로 2000년, 2007년에 방한하여 송이버섯을 선물하기도 했다.
- [8] 2004년 5월 26일 금강산에서 실시한 제1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북한측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제거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제라고 하면서 이 문제부터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4년 6월 3~4일까지 설악산에서 실시한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기한 서해 충돌방지 문제와 북한 측이 주장한 선전활동 중지 및 수단제거 문제를 상호주의적 차원에서 일괄 타결하여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킨 이후 중지하였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자유의 소리’란 이름의 FM 전파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하지만 FM 전파는 라디오가 있어야 청취가 가능하다. 전단 살포나 라디오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확정기 방송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만류와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에 옮기지 못했다.
- [9] 군사력 비교평가방법의 참조 자료는 이영우·김윤태, 『남북한 군사력 비교평가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1991, p. 31.
- [10] 남북한 군사력 비교방법에 대한 ‘군사력 비교는 단순 숫자비교가 아니다’는 집중분석에서 단순개수 비교로 군사력 측정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5, pp. 38~40.
- [11] 국방부, 『2014 국방백서』, 국방부, 2014년, p. 10.

- [12] 국방연구원, 『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력동향』, 국방연구원, 2011, pp. 166~167.
- [13] 국방백서는 1967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에서 최초 발행하였으며, 초기에는 불규칙하게 발행되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정례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 [14] 1985년 11월 21일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1981년에 45%에 불과했던 전방병력을 금년도에 65%로 대폭 증강시킨 반면 상대적으로 중심 및 후방지역 전력을 55%에서 35%로 감소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1985년 11월 21일자
- [15] 최초로 비무장지대의 신뢰구축이 논의되었던 1970~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였다. 신뢰구축 논의에 대한 자료는 ‘군사정전위원회 편람’과 통일연구원의 정책연구시리즈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참조하였다.
- [16] 북한측이 제안한 7개항은 ①주한미군의 즉각 철수, ②한국내의 신무기 도입 중지, ③한국내 도입된 각종무기 반출, ④군사도발과 침략행위 금지, ⑤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철수 및 파괴, ⑥공동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⑦남북한 민간인들이 비무장지대를 월경하여 자유왕래 허용 등을 제안하였다.
- [17] 통일원,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방안 관련 주요 제의 : 실무보고 자료』, 통일원, 1987, p. 2.
- [18] 북한은 1981년 1월 부주석 김일 명의의 성명에서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현 한국정부의 퇴진, 정치범 석방과 반공법 폐지,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였으며, 동년 7월 김일성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 축하문을 통하여 남측 정부와는 어떠한 대화도 접촉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한국정부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논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 [19] 비무장지대 관련 제안 내용은 ①경의선 도로연결, ②설악산과 금강산의 자유관광지역 공동설정, ③비무장지대 내 공동경기장 건설, ④비무장지대 내의 자연생태계 공동학술조사, ⑤판문점을 통한 외국인 자유왕래, ⑥자유로운 남북 공동어획구역 설정, ⑦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완전 철거 등 7개항이다. 통일원, 『1990 통일백서』, 통일원, 1990, pp. 39~41.
- [20] 통일원, 『1990 통일백서』, pp. 40~41.
- [21] 비무장지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경의선 철도 연결하는 통일역사의 건립,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의 광장 설치, 민족문화관, 남극학술교류센터 등 건립, 남북 상품 교역장 설치, 운동경기장, 종교인들의 공동 집회 장소 건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과를 보아가면서 제2, 제3의 ‘통일평화시’을 건설하여 비무장지대 전체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음도 밝혔다.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본해설자료』, 국토통일원, 1989, pp. 27~28.
- [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북남 신뢰조성. 1.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한다. 2.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① 비무장지대 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과 군사장비들을 철수한다. ②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한다. ③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도록 한다. 3. 북과 남은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① 쌍방 고위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설치·운영한다. 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북남 무력 축감. 4.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 한다. 5.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을 중지한다. 6. 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셋째, 외국무력의 철수. 7.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든다. 8.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일체의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넷째,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9. 북과 남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안에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비통제와 북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 합의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군 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남 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0. 북과 남은 협상을 통하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인 군축에 합의하여야 한다.
- [23]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로 정식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발효) 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정전협정과 관련하여 첫째, 남북은 제5조에서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 한다”고 하였으며 둘째, 제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는 중요한 기본원칙을 재확인하였다.
- [24]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쌍방이 8회의 예비회담과 6회의 고위급회담 및 13회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하여 합의되었다. 비무장지대를 논의한 회담은 제1차와 제5차의 고위급 회담이었다. 제1차 회담에서 북한 측은 군사적 대결해소를 위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자고 하였으며,

비무장 지역내 군인들의 군사장비 철수, 군사시설 물 해체, 비무장지대를 민간인에게 개방 등을 제의하였다. 제5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을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여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남북한 사이의 최초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Ⅱ): 합의과정에서의 쟁방 주장』, 통일원, 1992, pp. 119~120.

- [25] 비무장지대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중화기 우선 철수, 점진적으로 GP 철수 등 많은 평화적 이용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동아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2013. 6. 26
- [26]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남측의 도라산역에서 북한 개성공단까지 38선 이후 최초 남북을 잇는 4차선 도로이다. 이 길은 유엔사가 아닌 남북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유엔사는 2003년에 군사정전위원회가 직접 관할하는 판문점을 제외하고 도라산역에서 개성공단 통로와 금강산 가는 동해선 출입관리를 한국 측에 위임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관리권만 이양했지 관할권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미국과 논란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결국 노 대통령도 ‘형식상’ 유엔사의 허가를 얻고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현재도 남에서 개성공단을 오가는 기업체 차량은 형식적으로나마 유엔사 허가를 얻게 되어 있다.
- [27]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Ⅰ):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통일연구원, 2009. 제성호, ‘정전협정과 남북교류협력’, 한반도군비통제, 제38호, 국방부, 2005. 고경빈, ‘DMZ 평화지대화와 남북관계’, 북한학연구 제3권 2호, 2007.
- [28] 박광득, ‘정전협정의 주요내용과 쟁점분석’, 통일전략 제14권 2호, 2014. 이장희, ‘세계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본문제’, 사회과학논총 제10집, 1995.
- [29] 4개 분야 외에도 추가적인 방안들이 있지만 평화적 공존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은 단선적으로 되어있진 않고 제시된 주요 4개 분야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 [30] 개성공단지역 선정시 개성지역을 공단으로 내어줄 경우 공단을 통한 한미 연합전력 공격을 우려한 북한 측 군부의 반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측은 비무장지대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수도권 및 서울까지의 중심 즉 군사지리적 이점(외곽 40km, 내부 60km)을 활용한 남한 기습공격 및 체제 담보의 전략을 우려하고 있다.

[저자소개]



이성춘 (sung-choon Lee)

1986년 2월 전남대학교 학사
 2004년 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
 1990년 8월 동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2013년 8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북한학박사
 현재 송원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조교수

email : koreabeijingtop@gmail.com